##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49

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:이헌승·조경태·박성민

백종헌 • 서지영 • 김선교

강선영 · 서일준 · 박성훈

박덕흠 · 정성국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,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 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아울러 장애인, 아동 등 직접 고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경우,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결정이나 조건을

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,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며, 이의신청권의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45조의7 및 제294조의4).

법률 제 호

###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5조의7제1항 중 "사람(고발인을 제외한다)은"을 "사람은"으로 한다.

제294조의4제1항 중 "재판장에게"를 "법원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재판장은"을 "법원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재판장은"을 "법원은"으로, "열람"을 "결정으로 열람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재판장이"를 "법원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4항에 관한 재판에"를 "제4항의 결정에"로, "불복할"을 "즉시항고를 할"로, "없다"를 "있다"로 한다.

⑤ 법원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24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4조의4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29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5조의7(고소인 등의 이의신	제245조의7(고소인 등의 이의신
청)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	청) ①
받은 사람(고발인을 제외한다)	<u>사람은</u>
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	
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	
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94조의4(피해자 등의 공판기	제294조의4(피해자 등의 공판기
록 열람・등사) ① 소송계속	록 열람・등사) ①
중인 사건의 피해자(피해자가	
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	
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	
자・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	
포함한다), 피해자 본인의 법정	
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	
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	
· 직계친족 · 형제자매 · 변호사	
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	<u>법</u>
를 <u>재판장에게</u> 신청할 수 있다.	<u>원에</u>
② <u>재판장은</u> 제1항의 신청이	② 법원은
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,	
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	
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	

- ④ <u>재판장이</u> 제3항에 따라 등 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 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 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<신 설>

<u>⑤</u> (생 략)

<u>⑥</u> 제3항 및 <u>제4항에 관한 재</u> <u>판에</u> 대하여는 <u>불복할</u> 수 <u>없다</u>.

<u>нис</u>
<u>결정으로 열람</u>
④ <u>법원은</u>
⑤ 법원은 열람 또는 등사를
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
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
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
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
야 한다.
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
<u>⑦제4항의 결정에</u>
<u>즉시항고를 할</u> 있
<u> </u> 다.